

관광협회중앙회관광공제회 ‘호텔종합공제’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 적 및 용 어 의 정 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공제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공제료>

공제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공제회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공제료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순공제료, 공제회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 및 공제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공제료 = 순공제료 + 부가공제료 + 손해조사비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공제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마. 피공제 이익 : 이 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 또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공제가입금액 :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 공제회가 지급할 최대 공제금을 말합니다.

나. 공제가액 : 재산공제에 있어 피공제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공제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공제회가 실제 지급하는 공제금은 공제가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공제)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공제회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계산법>

$100\text{원(원금)} + 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2\text{년차 이자}) = \text{총 } 121\text{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공제회가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공제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공 제 금 의 지 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공제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공제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해설]

<청소비용>

청소비용은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아래의 물건은 공제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공제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용어해설]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공제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 피공제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의 경우 : 피공제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치 태만히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공제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공제회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공제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공제회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공제회는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제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가지급공제금>

공제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회가 예상되는 공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공제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제회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공제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공제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공제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공제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

긴 후의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잔존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의 목적이 둘 이상 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공제회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의 80\% 해당액}}$$

②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다른 공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자 1인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공제)자의 지급보험(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공제)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공제)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공제)금의 합계액}}$$

3. 이 공제계약이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이면서 공제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을 그 다른 보험(공제)계약에 우선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가 타인을 위한 보험(공제)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공제)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공제)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공제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④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공제회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공제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공제회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공제회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공제)계약을 말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계 약 자 의 계 약 전 알 린 의 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취소후 공제회가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관 공 제 계 약 의 성 립 과 유 지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공제)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공제회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공제회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회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공제회가 전자우편, 전자적 의사표시(공제회 홈페이지 공시를 포함)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공제회 홈페이지 공시를 포함)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공제회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공제계약의 중요사항

③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공제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회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공제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공제회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공제회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사업방법서 : 공제회가 공제사업의 주요사항을 정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 공제자의 범위,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③ 공제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공제회의 보장개시)

①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공제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제회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공제회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공제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공제회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공제회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제회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제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공제회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공제료 등 및 공제회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공제회는 해지 전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회는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공제회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회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회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 약 의 해 지 및 공 제 료 의 환 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회 임직원, 공제회로부터 모집위탁을 받은 자 등 공제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공제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모집인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공제회는 다른 보험(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공제회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공제회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제회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위법계약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공제회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내부규정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공제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공제회는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금이 지급되어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공제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②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년도의 공제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년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공제회가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 쟁 의 조 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공제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의사항]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제38조(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공제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공제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공제)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공제회의 손해배상책임)

- ① 공제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제회 공제모집인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공제회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공제회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공제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공제회가 공제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공제 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제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 및 보험(공제)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공제규정 및 (재)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공제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회공제규정 및 공제회가 가입한 (재)보험 지급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추가조항)

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작업금지 추가조항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 공제회에 알린 작업보다 더 위험한 작업(적용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위험품 추가조항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배급업자 및 도매업자 점포 포함), 저장용 탱크, 사일로 및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또는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아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보통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A급,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3.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특별 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③ 화기금지 추가조항

창고시설(공장 내 부속창고 포함), 보관용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공제의 목적 또는 공제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④ 냉동(냉장)위험 보장 제외 추가조항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제회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소화설비 추가조항

공제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공제료를 내어야 합니다

⑥ 공지할인 추가조항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공제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공제료를 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공지할인 : 건물주위 공지거리에 따른 할인

공지 : 도시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이나 녹지

⑦ 신규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전 선계약 추가조항

신규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공제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작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⑧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공제가입금액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 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도난당한 공제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4. 공제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5.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공제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줌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6. 공제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 ① 공제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공제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피공제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공제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공제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 당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공제금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공제자는 그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문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한번의 사고(공제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②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1,※2) 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공제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 ② 공제회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유의사항]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공제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공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공제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공제회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유의사항]

공탁 :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합니다.

공탁보증공제료 :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공제상품의 공제료

마.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 목, ‘나’ 목 및 ‘마’ 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 목 및 ‘라’ 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공제금의 비례배분)

피공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제회는 특수 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공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공제회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궤도차량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화재로 생긴 손해 이외에 충돌, 추돌, 접촉, 전복, 탈선, 추락, 가선장해(架線障害) 및 폭발(이하 「차량의 사고」라 합니다)로 공제의 목적인전차, 기관차, 객차, 유조차, 화차 등(이하 「차량」이라 합니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와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1. 차량의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 공제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기적 사고로 생긴 전기기기 및 장치의 손해. 그러나 위 제1조에서 부담하는 차량의 사고로 생긴 전기적 사고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해일 또는 홍수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제3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서 정한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에 따라 임지 안의 임목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 밖의 가공작업.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공제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벌채, 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 및 풍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수지의 채취,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 및 그 밖의 작업

제3조(보상의 예외)

공제회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임지 안에 벌도목 또는 풍도목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풍도목만 있고 그 재적(材積)이 임목 및 풍도목의 전재적의 10% 미만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작업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 및 제3조(보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반출입, 화입 및 목탄제조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 1, 2, 3)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1. 임목 및 벌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2. 임목
 3. 임목, 벌도목 및 화목

② 벌(풍)도목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3조(보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①, ②, ③, ④)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① 임목 및 벌도목(화목은 제외)

- ② 입목
- ③ 입목 및 풍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 ④ 별도목(입목, 목탄 및 화목은 제외)

③ 수지의 채취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수지의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의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표고버섯의 원목 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 위험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조각재별도목 및 제품의 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공제회는 산림화재공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3조(보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임지 안에서 아래의 각호의 작업을 하는 동안 및 별도목(이하 「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공제의 목적인 입목, 별도목재, 조각재 및 그밖의 가공된 제품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목탄 및 화목은 공제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밖의 가공작업
2. 이 경우 임지에 연결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공제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3.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및 그밖의 작업

산림풍수재위험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임지안의 입목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회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2. 댐 및 방축의 붕괴로 생긴 손해 그러나 붕괴가 제1조에 정한 위험으로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 중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풍재」 또는 「수재」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냉동(냉장)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 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이 증권에 기재된 유가증권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소요되는 다음의비용(이하 『재발행비용』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쇄비
2. 인지대
3. 신문광고비와 법원관계비용
4. 대서료
5. 기타 직접비용

제2조(예치공제료)

예치공제료는 보상한도액의 75% 해당액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용어해설]

공제요율 :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제단위 또는 단위위험 당 적용된 비율로서 공제요율에 공제금액을 곱하게 될 경우 공제계약자가 지불하는 공제료가 됩니다.

제3조(재발행가액의 통지)

- ① 피공제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보유 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을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제회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전번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중 높은 쪽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4조(공제료의 정산)

-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의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공제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공제료는 예치공제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 ② 공제회는 위 제1항의 확정공제료와 예치공제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보상)

①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른 보험(공제) 계약이 없을 때 : 재발행 비용 전액
2. 다른 보험(공제) 계약이 있을 때 : 각 보험(공제)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발행 비용

② 공제회에 통지된 최종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이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보다 적게 통지한 때에는 위 제1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에 대한 최종통지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공제회는 위 제1항, 제2항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 단위 계산에 의한 확정공제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회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감으로써 생긴 손해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가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공제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 ②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Ⅲ)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공제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제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공제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의 목적의 공제가입금액(단, 재고자산 부분을 제외합니다)이 공제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공제가액의 공제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 「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공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화재공제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에 가입한 금액(이하 「공제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left\{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부보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right\}$$

※ 제1조(공제가입금액), 제2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의 규정은 각 공제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II(화재, 구내폭발)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별약관(해당 특별약관 가입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아래의 가입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최대 가입금액	비고
건물(건물 및 집기 등 재고자산외 일체 목적물)	㉠ 10억 이하	소제지별 가입금액이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동산(재고자산)	㉡ 2억 이하	

제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①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자 1인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공제)자의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의 합계}}$$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공제)금의 합계액}}$$

3. 이 공제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공제)계약이면서 공제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을 그 다른 보험(공제)계약에 우선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가 타인을 위한 보험(공제)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공제)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공제)금을 초과한 손해액

을 이 공제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구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2조(손해의 보상)

공제회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조달가액이라 함은 공제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공제자가 파손된 공제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공제가입금액 및 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의 목적의 제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제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제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제조달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 \text{제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제조달가액}} \}$
- ③ 공제회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공제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 ④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공제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공제자의 추가공제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업휴지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이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이 증권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공제자의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공제회는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공제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수준으로 복구되는 동안에 피공제자가 입은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피공제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공제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공제계약에 의하여 공제금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중지, 소멸, 취소
4. 공제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휴지라 함은 공제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 중단을 말합니다.
2. 기업휴지손해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공제가입 경상비 및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3.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경상비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

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서 기업휴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공제가입경상비(고정비)라고 합니다.

5. 공제가입금액이라 함은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간의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공제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6. 매출감소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과 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이하 「표준매출액」이라 합니다)에서 복구기간내의 실제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복구기간이라 함은 공제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복구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복구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8. 이익률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1년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 + \text{공제가입 경상비}}{\text{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공제가입 경상비} - \text{영업손실} \times \frac{\text{공제가입 경상비}}{\text{경상비}}}{\text{매출액}}$$

9. 공제가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직전 해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표준매출액 및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계산)

피공제자가 기업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매출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text{지출되지 않은 공제가입 경상비}$$

제6조(약정 복구기간)

공제회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면책기간)

공제회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면책기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복구기간에서 빼고 보상합니다.

제8조(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위 제3조 제9호 및 제5조(손해액의 계산)에 정한 공제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액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의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이 약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제9조(손해의 경감)

① 피공제자는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공제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증권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② 공제회는 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공제자가 복구기간 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소화비용은 제외)을 이 특별약관 제8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 합계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합니다.

제10조(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복구기간 만료 후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업휴지가 1개월 이상 계속되어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으면 매월 말에 공제회가 추정하는 가지급 공제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제금지급 후의 공제가입금액)

보통약관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공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계약상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피공제자가 영업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 특별약관상의 용어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1. 표준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복구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text{표준매출액} = \frac{\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times \text{복구기간}}{\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2.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12개월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text{연간매출액} = \frac{\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times 12\text{개월}(365\text{일})}{\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3. 이익률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 + \text{공제가입 경상비}}{\text{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공제가입 경상비} - \text{영업손실} \times \frac{\text{공제가입 경상비}}{\text{경상비}}}{\text{매출액}}$$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자체의 수리,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 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급배수설비 자체의 수리,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건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공제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접촉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공제의 목적이나 공제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 물리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공제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통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오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공제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회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화재공제 요율서상 공장물건 요율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의 80\% 해당액}}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회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화재공제 요율서상 공장물건 요율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left\{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의 80\% 해당액}} \right\}$$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공제회의 공제보장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공제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2조(공제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체(화재공제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공제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공제가액 및 공제가입금액)

공제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둘째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6조(공제금의 계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공제조건의 변경)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락 여부를 회신합니다.

제6조(공제금의 계산)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① 공제가입금액을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손실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공제가입금액을 공제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공제금을 계산합니다.

2. 제1호에서 계산한 금액이 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공제회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공제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가치하락 보장 제외)

①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공제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토목건설 등의 기재등록)

① 공제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공제의 목적의 공제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상실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공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공제회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공제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은 「규정렌탈료」 또는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공제회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징벌적 손해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회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공제회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공제)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공제)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으로서 보험(공제)계약(각종 보험회사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니다.

제9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공제)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공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 비례분담 예시1 >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회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 비례분담 예시2 >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회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공제회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공제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회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피공제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해설]

재물손해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공제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회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공제회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회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공제)과의 관계)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공제)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약(각종 보험회사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제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공제)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공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공제)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회의 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공제금의 비례배분)

피공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공제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공제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공제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공제)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공제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 ① 보상한도액은 공제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공제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치공제료)

예치공제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 ① 피공제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공제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 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5조(공제료의 정산)

-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공제료를 계산합니다. 확정공제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공제료는 예치공제료의 50% 해당액을 밀돌 수 없습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확정공제료가 이미 낸 예치공제료를 밀돌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 ① 공제회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그러나, 정한 기일 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최종통지 재고가액}}{\text{최종통지 재고가액 작성당시의 실제 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 또는 최종통지 재고가액 중 높은 금액}}{\text{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⑤ 다른 보험(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용어해설]

복원공제료 : 공제기간중 공제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공제료로서 잔여 공제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⑥ 공제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공제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공제가액 특별약관

제1조(공제의 목적)

공제회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공제가액)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공제기간 중의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가입금액)

제2조(공제가액)의 공제가액을 공제가입금액으로 하여 공제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 「다수보험(공제)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공제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공제)계약을 맺은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공제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공제가액과 공제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공제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공제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사실을 공제회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제회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 ① 공제회는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알릴 의무)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공제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환율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 적용기준)

공제회는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약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은 지급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공제증권은 아래의 보험회사(공제)들을 대리하여 ()가 발행하며 각 보험회사(공제)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공제)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공제)계약 특별약관

공제회는 이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공제)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부담위험	보험(공제) 가입금액	보험(공제) 료	보험(공제) 자	보험(공제) 기간	비고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공제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회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공제회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 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공제회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공제회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제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공제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공제회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회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공제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서 공제금(사망공제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공제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공제금 청구를 받더라도 공제회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공제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공제회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공제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공제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제증권, 상품설명서, 공제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등 (이하 “공제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공제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공제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공제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제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